

##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·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

(’19. 7. 09(화), 감사담당관)

### □ 점검 개요

- (법적근거)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(이하 “주식보유·거래”) 적정성을 점검(연 2회)
  - \* 근거: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3(금융투자 상품의 신고사항 심사)
- (점검범위) 2018. 7. 1. ~ 2018. 12. 31. 기간 중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\*의 보유·거래 신고사항 \* 상장주식·비상장주식·전환사채
- (점검대상) 의료제품·건강기능식품분야 대민업무부서 공무원심사관 포함
  - 본부 의약품·바이오·의료기기안전국, 평가원 의약품·바이오·의료기기심사부, 영양기능연구팀, 지방청 의약품안전관리과·의료제품안전과·의료제품실사과 근무자 총 658명<sup>1)</sup>

### □ 점검 사항

- 직무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확인을 위해 개인별 신고(1차), 신고자 대상 주식거래 시기와 민원처리내역을 비교하여 직무 관련성을 확인(2차)
  - \* 점검방법은 개인별 신고자료를 토대로 한 민원처리내역 대조로 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미신고 등의 정밀 검증에는 한계 有
- 점검대상 658명 중 주식거래 사실이 있는 116명이 신고하였고, 우리 處 업무 관련 주식보유·거래자 총 32명을 심사
  - \* 행동강령 개정시행(’17.10.1)에 따라 주식거래·보유기간(1차: ’17.10.1~12.31, 2차: ’18.1.1~6.30)에 2회에 걸쳐 신고 내용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

1) 휴직, 파견 및 퇴직 직원은 점검에서 제외

【비공개 자료】

□ 점검 결과

1 직무정보이용 주식거래 여부 점검대상(18명)

직무정보이용이 의심되는 18명의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(개인 및 근무부서)을 점검기간(18.7.1~12.31) 확인한 결과,

- 의약품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분야 주식매수,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
- 또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매시점에서 민원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, 부당이익 실현을 위한 직무거래위반으로 보기 어려움

① 직무분야 주식 매수 등 보유

- 000(000)는 의약품부서 근무 중 의료기기분야 주식 매수, 000(000)은 임용이전 취득주식(미국, 바이오주)의 정기배당에 의한 주식 증가 이었는데, 해당 주식 관련
  - 매도 등 처분내역 없고 매수시점에 민원처리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음

② 직무분야 주식 매도 등 거래

- (임용 전 취득) 000(000)은 전량매도를 000(000)은 일부매도를 하였는데
    - 매도시점에 민원처리내역 확인되지 않았고, 차액은 000 882,700원(13년 기간 보유 후 전량매도), 000 - 170,000원(1,050주에서 150주매도)으로 미미함
  - (임용 후 취득) 000(000), 000(000)등 5명은 매도, 000(000)은 매수·매도를 하였기에 해당 민원업무와 주식매도시점을 대조하였는데
    - 000, 000은 근무부서내 민원처리내역이 확인되었으나 직접 민원처리 건은 아니며, 차액 또한 000 -4,487,250원, 000 209,343원으로 부당이익 실현을 위한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로 보기가 어렵고
    - 000 등 5명은 매도시점에 민원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,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려움
- \* 매도차액: ⑤ 000 69,934원 ⑥ 000 -4,487,250원 ⑦ 000 2,997,058원 ⑧ 000 -1,661,150원 ⑨ 000 602,794원 ⑩ 000 20,165원 ⑪ 000 209,343원